런던 한국학교 규정

(2026 년 3 월 16 일 개정)

<총론>

제 1 조 : 명칭과 목적

런던한국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, 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재외교육기관이다.

제 2 조 : 학교운영조직

학교는 이사회, 교무회의, 학부모회 등 세부조직에 의해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. 교무회의는 교장, 교감, 교무로 구성한다.

제 3 조 : 재정

학교의 재정은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,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하며, 매 학기마다 학교장이 작성한 예산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.

<이사회에 관한 규정>

제 4 조 : 이사회의 기능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2. 학교장 임면에 관한 사항
3. 학교의 재정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 5 조 :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

1.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(1) 일반 이사: 한인사회 각계 인사 8 인
(2) 교육원장 1 인
(3) 학교장 1 인
(4) 학부모 대표 1 인
(5) 직전 학교장 1 인

2. 이사의 선임: 현 이사에 의해 추천된 인사에 대하여 전체 이사회에서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.

3. 이사의 임기는 위의 제(2) - (4)형의 경우,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에 한하며, 그 외의 이사의 임기는 선임

결의된 날짜로부터 2 년이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5)의 경우 그 임기는 현 학교장의 재임기간과 같다.

4. 이사회 최소 인원은 총 6 명으로 한다.

5. 임기 종료된 이사의 재선임은 임기 만료 후 1 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.

제 6 조 : 이사장과 부이사장

1.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각 1 인씩 두며,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3 명의 이사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전체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의 2/3 찬성으로 선임한다.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2 년이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2. 이사직 임기 내에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경우 이들의 임기는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으로 선임 결의된 날짜로부터 2 년이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3.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가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. 부이사장은 이사장 결원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: 면직

이사장, 부이사장 및 이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적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면할 수 있다.

제 8 조 : 이사회의 소집

1. 이사장은 연 2 회 예,결산 심의 및 감사를 위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. 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3. 이사는 본인의 임면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.
4.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: 감사

1. 감사는 이사 중 1 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2 년이며,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. 감사는 학교재정(기부금을 포함) 및 회계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.
3. 감사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.

<런던한국학교 교원 및 학교업무에 관한 규정>

제 10 조 : 학교장

1. 학교장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여야 한다.
2. 학교장은 영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.
3. 학교장의 임기는 2 년이며,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4. 임기의 제척: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임시 휴교를 한 기간은 학교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학교장 임기의 1 년은 1 학기와 2 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학사일정을 원칙으로 한다.
5. 학교장은 교무회의와 전체 교사회의를 주재하고 학교의 행정 및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며 보다 질 높은 학생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.
6. 학교장은 제 6 항의 피 추천인사 주 이사회 제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7. 추천경로

(1) 대외추천 :제 1 항 및 제 2 항에 적합한 학교 외 인물로서 이사 3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
(2) 대내추천 :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적합한 학교 내 교사 중 전체교사회의 결과로 추천된 복수의 교사(2 명)

7. 학교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적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면할 수 있다.

제 11 조 : 교사

1.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에 관한 열의와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여야 한다.
2. 신규교사는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하며,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실력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.(예, TOPIK 6 급 이상)
3. 교감은 교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면한다.
4. 신규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.
5. 교사는 매년 3 월 1 일자로 계약을 경신한다. 또 첫 임용 시에는 당해 학년말까지 강사로 근무하며,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6. 교사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, 교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교무회의를 거쳐 징계 및 사임을 권유할 수 있다.

제 12 조 : 서무교사

-서무교사는 2 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회계와 관련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
1. 서무교사의 임면 과정은 교사의 임면에 준한다.
2. 서무교사의 업무

(1) 학생 등록에 관한 업무

(2) 학교의 재정(입학금, 수업료, 기부금 등) 및 예산집행, 회계, 결산에 관한 업무
(3)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
(4) 학교의 시설 및 비품 관리 유지에 관한 업무
(5) 학교행정 시무에 관한 업무

제 13 조 예산집행

1. 학교의 회계연도는 3 월 1 일부터 다음해 2 월말까지로 한다.
2. 학교의 연간 예산안은 회계연도 이전에 교무회의를 거쳐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3. 학교의 기부금품은 수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물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기록 보관한다.
4. 학교건립에 관한 모든 기금은 학교 재정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계정의 관리는 이사장 교육원장 학교장이 공동으로 한다.
5. 감사는 학교 건립에 관한 기금 내역을 감사하여 연 1 회 이사회에 제출한다.

제 14 조 결산 및 감사

매 학기말 서무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며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의 승인 후 이사회에 제출 보고한다.

<학부모회>

제 15 조 학부모회의 구성 및 활동

학부모회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구성되며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학부모회는 런던한국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로 구성된다.
2.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대표 1 인 부대표 3-4 인 각반 대표 1 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 년이며 2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
3. 전체 학부모대표는 각 반에서 선출된 명의 반대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.
4. 부 대표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(1-3) 학년 초등 고학년 (4-6)학년 중고등부 별로 각 1 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학년에서 선출한다.
5. 학부모대표는 매 학년 초 정기 학부모회의를 소집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경우 부대표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6. 학부모회의 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교육방향과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와 활동은 학교 측과 사전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7. 학부모회 활동결과는 수시로 전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회계 결산 시 이사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16 조 학교 규정의 변경

이 규정의 변경은 교무회의와 전체 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부칙>

1. **개정된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3 년 3 월 현재 이사진부터 적용한다.**
2. **2023 년 3 월 현재 재직 중인 교장과 교감의 첫 임기는 2022 년 3 월 1 일부터 2024 년 8 월 31 일까지로 한다.**
3. **신임 학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 (2026.3.16 개정)**

<부칙 3. 신임 학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>

제 1 조 (목적)

본 부칙은 신임 학교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장 선출 위원회 구성)

① 신임 학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「교장 선출 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하며, 현 교장을 포함한 교무팀 및 대표교사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회 구성원 중 교장 후보로 지원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제외한다.

③ 위원회는 선임 절차 전반을 관리하며, 공모, 심사, 투표 진행 및 결과 보고의 책임을 가진다.

④ 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및 진행 경과는 교사 조회 시간 또는 공식 공지를 통해 전체 교사에게 안내한다.

⑤ 위원회는 현 교장 임기 만료 6 개월 전부터 본 부칙에 따른 신임 학교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.

제 3 조 (교내 추천 절차)

① 위원회는 교내 공문을 통해 신임 학교장 내부 공모를 공고하고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.

②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1. 정관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
2. 만 65 세 이하인 자
3. 본교 정교사로서 2 년 이상 재직한 자

③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자기소개서
2. 이력서
3. 학교 운영 계획서
4. 본교 교사 2 인의 추천서

④ 내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자격 심사는 전체 정교사의 참여로 진행하며, 무기명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.

⑤ 투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자가 1 인인 경우: 정교사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때 후보 자격을 인정한다.
2. 지원자가 복수인 경우: 각 지원자별 개별 투표를 실시하며,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로 인정한다.
3.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: 득표 수가 높은 상위 1, 2 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,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후보로 인정한다.

⑥ 위원회는 정교사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획득한 지원자를 교장 후보자로 확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
제 4 조 (대외 추천 절차)

① 내부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, 학교 홈페이지 및 공식 공문을 통해 외부 공개 모집을

실시한다.
② 외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정관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
2. 만 65 세 이하인 자
③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자기소개서
2. 이력서
3. 학교 운영 계획서
4. 런던한국학교 이사 추천서 2 부
④ 위원회는 접수된 외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또는 발표 및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⑤ 외부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제 3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내부 공모 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정교사의 무기명 개별 찬반 투표로 실시한다.
⑥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교장 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
제 5 조 (이사회 선임 절차)
① 위원회가 추천한 교장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는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.
② 교장 후보자를 추천한 이사는 이익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
③ 이사회는 면접 후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, 출석 이사 3 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를 신임 학교장으로 선임한다.

제 6 조 (효력 발생)
본 부칙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7 조 (준용 규정)
본 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정관 및 관련 규정,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2006. 02. 10 (개정)

2015. 02. 24 (11 조 2 항 개정)

2016. 02. 24 (전면개정)

2017. 09. 08 (10 조 3 항 개정)

2019. 07. 04 (개정)

2019. 09. 31 (개정)

2022. 04. 30 (개정)

2023. 3. 13. (개정)

2026. 3. 16 (개정)